

# 심사보고서

○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산업경제위원회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89
----------	-----

2016.11.30.(수)  
산업경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1월 23일

(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이차영)

가. 제안이유

○ 투자유치 불리지역의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결산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투자유치위원회 기능 추가(안 제5조)

- 기금 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

○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13조④항)

- 종전 2016년 12월 31일 ⇒ 개정 2021년 12월 31일

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오성일)

○ 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투자유치 불리지역의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결산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함

○ 다만, 관련 부서로부터 최근 3년간 기금출연 현황과 사용내역 등 기금운용에 대한 현황을 청취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투자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, 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 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

제13조제4항 본문 중 “2016년 12월 31일”을 2021년 12월 31일“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4.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 · 6 (생략)</p>	<p>제5조(기능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4. 투자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, 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 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 · 6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투자진흥기금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16년 12월 31일까지</u>로 한다. 다만,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13조(투자진흥기금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2021년 12월 31일</u>-----, ----- -----.</p>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7.24.>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